

육가공 알리판

보건사회부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사부직제를 공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보사부위생국에는 식품유통과가 신설되고 위생과는 위생정책과로 개칭됐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위생국 각과별 업무분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생정책과

△ 식품 및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 식품 진흥기금의 관리운영

△ 식품 관련단체의 관리

△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의 지도·단속

△ 식품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생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식품과

△ 식품제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식품·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제정

△ 식품의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수립

△ 식품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관리

△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운영.

• 식품유통과

△ 식품유통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식품등의 수급동향 및 가격지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기구·용기·포장의 규격기준 제정

△ 수출입 식품 등의 영양·안전성 등에 관한 관리

△ 육가공·육가공식품에 관한 위생관리업무

• 공중위생과

△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공중위생접객업소의 관리 등

• 위생관리과

△ 식품위생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

△ 식품제조업소·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위생 및 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유해물질 등 식품의 수거검정에 관한 지도·감독

△ 식중독에 관한 사항

• 음용수관리과

△ 음용수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위생용품 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에 관한 사항

△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존음료수에 관한 사항

△ 음용수관리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기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사회부고시 제90-84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0. 11. 29

보건사회부 장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제7. 일반시험법중 14. 축산식품 중 잔류물질 시험법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육가협제151호(90. 12. 4) 회원사 발송내용 참조)

보건사회부 고시 제91-14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1. 4. 3.

보건사회부장관

20-4 냉동식품란의 1)정의중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비가열식육제품 제외)

식위법 개정령 공포

정부는 3월 1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식품의 사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및 유통 전문 판매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육부산물과 증가추세에 있는 주문자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신설하여 식품유통관리를 전문화 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의 종류에 식육판매업과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 등을 신설했다.(육가협 제40호. 91.3.25참조바람)

농림수산부

정부는 금년도에 국비 2백6억5천만원, 지방비 22억원, 축산진흥기금 3천1백24억1천6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 97억 8천 5백만원 등 총 3천4백50억5천1백만원을 투입, 축산관련사업을 집행 또는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예산은 '90년보다 28.2% 증가된 금액이다.

정부는 특히 금년도에 축산구조개선과 축산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키로 하고 구조개선에 755억, 축산폐수처리에 319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91년 축산정책목표를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업을 농가주소득원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정착 ▲축산업의 구조개선추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축산물 유통개선 지속 추

진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사료수급안정 ▲축산공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1년도의 육류소비량을 쇠고기 18만2천톤, 돼지고기 51만 9천톤, 닭고기 17만8천톤, 계란 41만 2천톤, 우유 2백만 7천톤으로 추정하고, 한우 1백 70만 1천두, 젖소 52만 8천두, 돼지 4백 97만 두, 닭 8천 76만3천수를 사육할 계획이다.

돈육 8천톤 수입

농림수산부는 올해 돼지고기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고 당면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2월중 2천톤을 수입.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돼지고기 수요는 수출수요 6천톤을 포함해 52만6천톤으로 예상되며 공급은 51만1천톤으로 1만5천톤(총수요의 2.8%)이 부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국내돼지 증식과 출하체중 상향조정 및 육가공원료에 칠면조 고기등이 대체되고 올해부터 수입자유화된 돼지고기 식용설육 등으로 상당한 물량이 충당되더라도 8천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우선 2천톤('90수입/수출 잔여량 기준)을 2월중에 긴급수입했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축협중앙회에서 하고 축공에서 경매하게 되는데 주된 수입국은 대만이나 덴마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물량은 국내돼지사육 및 가격동향에 따라 운영하게 되는데, 상한선이 14만원(90kg기준)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1월중 산지성돈가격은 17만2천원(90kg)으로 지난 연말의 15만8천원에 비해 1만4천원이나 올랐으며, 소비자가격도 2,439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8.2% 상승했는데, 돼지고기의 물가기여도는 0.129였다고 발표했다.

정부 축협에 돼지고기 수입지시

농림수산부는 1월 31일 축협중앙회에 연간 수입 추정물량 8천톤중 2천톤을 국제경쟁 입찰방법에 의

해 최단기일내 입하되도록 조치강구 하라고 지시했다.

당면한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과 연계해서 부분육 또는 지육을 도입 서울소재 도매시장에 상장 판매토록하고, 판매차익(도매시장 낙찰가-상장예정가)은 축진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만약 국내가격하락으로 판매가 어려울 경우는 비축보관키로 했다.

그리고 국내 돈육가격동향과 돼지고기 수출실적 물량 등을 고려하여 돼지고기 가격안정대 상한선(140천원/90kg)이상시에만 수입토록하고, 2월에 2천톤 구매후 나머지 물량은 월1회 내외 수입토록 했다.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 金正瀧 통상관

정부는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에 曹圭一제2차관을 제2차관보에는 金漢坤기획관리실장을 2월13일 진보 발령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 농업협력통상관에 趙壹鎬농업구조정책국장을 농림수산통계관에 徐漢革국립종자공급소장을 농업구조정책국장에 李相茂농업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를, 농산물유통국장에 金東泰농림수산통계관을, 축산국장에 金正瀧농업협력통상관을 각각 진보 발령했다.

또한 농업공무원교육원장에 安性奉농산물유통국장을 국립종자공급소장에 權正鉉농촌경제연구원 과견을 임명했다.

한편 金允善농산국장, 李官範농어촌개발국장, 朴相禹양정국장은 유임됐다.

축협중앙회

축협중앙회는 축산물 판매를 전담할 (주)한국축산유통과 축산물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주)한국축산무역을 자회사로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축협 자회사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와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주)한국축산유통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축산소비확대와 상품화 연구 ▲정부 위촉사업 등으로서 한우포장육 판매가 주종사업이다. (주)한국축산무역은 ▲농축산물 수출입업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사료원·부자재 수출입업 ▲중축을 포함한 가축 수출업 ▲축산관련 기술도입 및 수출 ▲무역대리업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대원장에 전 농촌진흥청장 朴正潤씨가 취임했다.

2월 1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權泰完초대원장 후임으로 이번에 취임한 차원장은 60년 서울대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61년 농업시험장 근무를 시작으로 26년간 농업관련업무를 맡아왔다.

◇ 약 력

△35년 2월 27일생 △60년 서울대농대농학과 졸업 △75년 농학박사(원광대) △80년 농수산부 농산국장 △84년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86년 농촌진흥청차장 △88년 농촌진흥청장.

대만, 돈육수출 크게 신장

지난해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15만8천톤으로 89년보다 무려 40.5%나 증가했다.

이같은 물량은 육돈 3백95만 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대만 총 도축 두 수 1천2백18만 두의 32.4%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대만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급증한 것은 과잉생산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전례없이 돼지고기 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15만8천톤 중 냉동육이 13만4천4백톤(85%) 냉장육2만3천5백톤(15%)으로 89년 냉동육 9만3천4백톤(83%), 냉장육1만9천톤(17%)에 비해 냉장육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물량은 크게 늘어났다.

대만의 대일 돼지고기 수출은 87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90년엔 일본 수입수요의 64%를 공급했고 이중 냉동육은 일본시장의 41%나 차지했다.

작년 냉동육의 수출단가는 냉동육의 수출단가는 냉동육이 톤당4천2백75달러, 냉장육은 4천8백83달러로 89년의 4천5백58달러, 5천3백14달러에 비해 낮아졌다.

축산물 등 수입자유화

금년부터 돼지고기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을 비롯한 축산물 7개 품목, 대두박등 농수축산물 85개 품목이 수입자유화됐다.

이로써 지난 89년 정부가 예시한 농수축산물2백43개 품목이 자유화됨으로써 자유화율이 84.6%에 이르게 됐다. 올해 개방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과일(5개) = 파인애플·바나나·멜런·호두(안깎것·깎것)·헤즐넛 또는 필버트(안깎것·깎것)
- ▲ 축산물(7개) = 사슴고기·어린 면양의 고기(뼈째로 절단, 신선)·기타면양의 뼈없는 것(신선)·곤충류(꿀벌)·오리고기무절단(냉동)·어류를 제외한 동물의 장·돼지고기 식용설육(신선·냉장·냉동)
- ▲ 가공식품(20개) = 유채유(조유·정제유·기타)·미강유·마롱글라세·조당(사탕수수로 당도 98도 이하·이상, 사탕무우로 당도 98도 이하·이상)·칠면조 조제품(밀폐용기 이외의 것)·대두유(조유·정제유·기타)·해바라기씨유(조유)·복숭아(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옥배유(조유·기타)·기타 다랭이(통조림)·계살(통조림 이외의 조제품)·새조개(훈제)·고등어(통조림이외의 조제품)·생선소시지·기타 해초류(조제품) 어류의 피레트(신선·냉장) 기타 어류의 연육(신선·냉장)·성게(염장·염수장) 해양동물의 육과 식용설육·식용어분·상어지느러미(건조·염장)·문어(염장·염수장) 개량조개(염장·염수장)
- ▲ 곡물(9개) = 곡물의 배아, 채두분·조·수수·강낭콩·완두콩·기타 콩·기타 건조 채두류·대두분
- ▲ 사료(1개) = 대두박
- ▲ 기타(5개) = 떡갈잎·영계잎·옥사·견인사(소매용)·유채.

※ 돼지고기 식용설육(0206~30)

식용설육은 국제상품 분류방법상(HS : Harmoni-

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0206에 속하며 소, 돼지,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1월 1일부터 수입개방되는 돼지식용설육은 HS 0206·30(돼지의 것, 신선 또는 냉장한것)과 HS 0206·4(돼지의 것, 냉동한것)등에 한하며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횡격막(흉선과 횡격막),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격막, 얇은 횡격막, 비장, 혀, 대강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 주로 식용에 쓰이는 것을 예로 들면 머리와 그 절단육(귀를 포함한다), 발, 꼬리, 염통, 혀, 두꺼운 횡격막, 얇은 횡격막, 대강막, 목, 흉선등이다.

수입자유화 품목 확정

정부는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농·축·수산물 1백31개 품목, 공산품 2개품목등 모두 1백33개 품목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자유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월 29일 산업정책심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94년 수입자유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자유화확대조치는 지난89년 우리나라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국제수지위원회를 졸업하면서 잔존 수입 제한 품목을 92~94년간과 95~97년간으로 나누어 개방기로 한 약속에 따른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수출입 기별공고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2백73개 농·축·수산물 가운데 92년에 당밀 돼지 가자미 등 43개품목, 93년에 감귤류(조제) 오징어 등 44개 품목, 94년에 설탕 냉장돼지고기 명태 등 44개 품목이 각각 수입자유화되게 됐다.

또 공산품가운데서는 93년에 기타 생지견직물, 94년에 기타견직물의 수입이 각각 자유화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수입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현재 97.2%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92년 97.7%, 93년 98.1%, 94년 98.5%등으로 확대된다.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92년〉 (43개)

- △ 돼지(50kg미만의 것)
- △ 돼지(50kg이상의 것)
- △ 사슴
- △ 면양고기(도체와이분도체, 냉동)
- △ 면(뼈째로 절단한 것, 냉동)
- △ 면(뼈없는 것, 냉동)
- △ 고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 곱상어와 기타상어(신선 냉장)
- △ 전갱이(신선 냉장)
- △ 봉장어의 피레트(냉동)
- △ 가자미의 피레트(냉동)
- △ 기타의 냉동연육
- △ 기타 어란(염장 염수장)
- △ 어류의 피레트(건조)
- △ 기타 훈제어류(피레트포함)
- △ 까나리(건조 염장)
- △ 실치(건조 염장)
- △ 기타어류(건조 염장)
- △ 문어(산것, 신선 냉장)
- △ 우렁쟁이(냉동)
- △ 개량조개(건조)
- △ 기타의 연체동물(건조)
- △ 응고유와 응고크림
- △ 동물의 위
- △ 부화용 알
- △ 기타 냉동의 과일
-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일
-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의 분과 조분
- △ 기타의 식물성 산물

- △ 기타의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
- △ 기타의 가금류의 육 또는 조제품
- △ 정어리(조제)
- △ 기타 어류의 조제품(밀폐용기에 안넣은 것)
- △ 기타 어류를 조제, 저장처리한것
- △ 당 밀(사탕수수추출물)
- △ 밀(사탕수수이외의 것에서 추출)
- △ 기타 설탕으로 조제한 과일, 식물의 부분
- △ 기타 견과류 조제품
- △ 탁주
- △ 기타의 발효주
- △ 음료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
- △ 리큐르류

〈93년〉 (45개)

- △ 소의 혀(냉동)
- △ 닭고기(신선 냉장)
- △ 서대(신선 냉장)
- △ 정어리(신선 냉장)
- △ 돔(신선 냉장)
- △ 봉장어(신선 냉장)
- △ 아귀(신선 냉장)
- △ 넙치(냉동)
- △ 기타 넙치(냉동)
- △ 어류의 피레트(냉동)
- △ 기타의 어육
- △ 조기(염장 염수장)
- △ 전갱이(염장 염수장)
- △ 새우와 보리새우(산것, 신선 냉장)
- △ 오징어(산것, 신선 냉장)
- △ 오징어(염장 염수장)
- △ 문어(건조)
- △ 해삼(산것, 신선 냉장)
- △ 밀크와 크림(지방분 0.1 이하)

- △ 밀(지방분 0.1초과 0.6이하)
- △ 밀(지방분 0.6초과)
- △ 기타 어류를 조제, 저장처리한 것
- △ 기타 우유
- △ 난황
- △ 마늘(냉동)
- △ 기타 견과류
- △ 기타 과일류(신선)
- △ 들깨
- △ 조제 저장육
- △ 기타어류의 조제품(밀폐용기에 안 넣은 것)
- △ 게맛의 생선묵
- △ 오징어(훈제한 것)
- △ 오징어(조미한 것)
- △ 조제 감귤류
- △ 조제 포도
- △ 조제 사과
- △ 복숭아 주스
- △ 두부
- △ 기타 단백질계 물질
- △ 기타 벌꿀 조제품
- △ 기타 포도즙
- △ 기타 곡물발효주
- △ 기타 주류
- △ 기타 생사
- △ 기타 생지견직물

〈94년〉 (45개)

- △ 기타의 소
- △ 돼지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신선 냉장)
- △ 돼지고기(뼈째로 절단한것, 신선 냉장)
- △ 돼지고기(기타, 신선 냉장)
- △ 면양고기(도체와이분체, 냉동)
- △ 닭고기(절단, 신선 냉장)
- △ 돼지고기(절단,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 가자미(신선 냉장)
- △ 뱀장어(시선 냉장)
- △ 서대(냉동)
- △ 정어리(냉동)
- △ 돔(냉동)
- △ 전갱이(냉동)
- △ 북어(냉동)
- △ 어란(냉동)
- △ 어란(염장 염수장)
- △ 명태(건조 염장)
- △ 조기(건조 염장)
- △ 고등어(염장 염수장)
- △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 △ 기타 게(냉동)
- △ 갑오징어(산것, 신선 냉장)
- △ 문어(냉동)
- △ 새조개(냉동)
- △ 개량조개(냉동)
- △ 바지락(염장 염수장)
- △ 요구르트(액상이외의 것)
- △ 커어드

- △ 배(신선)
- △ 복숭아
- △ 단감(신선)
- △ 홍차(3kg이하의 포장)
- △ 홍차(3kg이상의 포장)
- △ 기타 맥아(볶은 것)
- △ 호프(펠리트 제외)
- △ 호프(펠리트 포함)
- △ 새우와 보리새우(브레드한 것)
- △ 설탕(착색제첨가)
- △ 설탕(착색제미첨가)
- △ 조제 생강
- △ 조제 감귤류
- △ 청주
- △ 백잡사
- △ 기타 견직물

일본 농축산 정보

일본에서 발행되는 농축산업관련 각종 전문지에 나온 주요기사를

발췌, 편집한 「일본농축산정보」 창간호가 나왔다.

매월 2, 4째 월요일에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이책은 일본정보 전문회사인(주) 퓨처 해외 정보서비스에서 수입자유화이후 1차 산업 종사자에게 해외정보편의를 돕기 위해 낸 것.

일본·농축산시장, 유통및 기술 정보, 신종상품소개, 농정등과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 우루과이라운드 동향등이 원문과 번역문으로 편집돼 있다.

주요 대상업종은 곡물, 야채, 과일, 화훼, 축산등으로 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돼 있다.

가격은 권당 4천원이며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 9천 6백원.